



문서번호	안전관리과-3403
결재일자	2015.9.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379호

주무관	도시안전팀장	안전관리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부구청장
박병민	양상섭	장완수	안대희	09/02 이비오
협조				

2015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

2015. 9.



안전관리과

사 전 검 토 사 항

∴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여 성 친 화 도 시	성 평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· 편 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족 · 공 동 체 회 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성 참 여 <input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 경 영 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유 지 비 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 른 공 공 언 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 약 계 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 등 발 생 요 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활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한국건설관리공사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 자 행 정 서 비 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(리 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type="checkbox"/>

● 홍 보 제 목 :

● 중점 홍보사항

-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20일 까지 성동구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
- 일제 조사시에 육교 등의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병행 실시
- 점검결과 드러난 재난발생위험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
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

우리구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시설의 안전 등급 재조정, 신규시설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·단기 해소 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7조(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·관리 등)
 -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지정하고 관리·정비하여야 함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 제31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)
 -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함
-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 기본계획(국민안전처, '15.8.20.)

II 조사개요

■ 조사기간 및 대상

- 조사기간: 2015. 9. 1. ~ 11. 20.
 - 일제조사 시 『하반기 정기안전점검(601개소)』 병행 실시
- 조사부서: 시설관리부서(총무과 등 16개 부서)
 - 부서별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(붙임1 참조)
- 조사대상: 시설관리부서 소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
 -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·관리지침('15.3.10.개정) [붙임 2]에 해당하는 시설

■ 추진방법

- 안전관리과 :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계획 수립 및 시설물관리 부서 통보, 조사결과 취합
- 시설관리부서 : 소관시설에 대한 세부조사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

■ 추진절차

조 사 절 차	추진기간	추진내용				
기본계획 수립 <안전관리과>	'15. 9. 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사범위 및 소관부서 결정 등 • 조사계획 수립(시설관리부서에 통보) 				
↓						
시행계획 수립 <시설관리부서>	'15. 9. 1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 수집 • 조사반 편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(안전관리과에 통보) 				
↓						
일제 조사 실시 <시설관리부서>	'15. 9. 14. ~ 11. 13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선별 •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(안전등급 평가매뉴얼 활용) 				
↓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조사결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시설관리부서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조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안전관리과></td> </tr> </table>	조사결과	<시설관리부서>	조치	<안전관리과>	~ '15. 11. 2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(안전관리과에 통보) •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통보 • 관리카드 작성 및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, 안전조치 통보 ※ <u>11.20까지 LDMS 입력 완료</u> • 공보 또는 게시판·인터넷에 고시 ※ <u>11.20까지 LDMS 입력확인 및 확정 완료</u>
조사결과	<시설관리부서>					
조치	<안전관리과>					
↓						
조사결과 및 해소계획 수립·보고 < 안전관리과 → 시 건설안전과>	~ '15. 12. 7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정관리대상시설(11.20. 기준) 현황 작성 • 장·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·보고 ※ <u>12. 7.까지 시 건설안전과로 제출</u> 				

■ 조사반 구성

- 조사반: 시설별 관리·감독부서
- 구 성: 해당분야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·점검
(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, 한국건설관리공사, 전기·가스안전공사 등 활용)

■ 주요 조사내용

-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
-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및 안전등급 평가(A~E)
- 『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』에 따라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(30%)·시설(70%)영역 평가

■ 유의 사항

- '15.3.10. 지침 변경에 따른 지정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
-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
-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·신고면적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
 - 다만,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
- 타 시·구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·운영하는 민간 노유자시설이 관내에 설치된 경우 시설물 소재지 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·관리
- 신규 허가·인가·등록 및 각종 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
 - 교량 등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(<http://bti.kict.re.kr>) 또는 e-나라지표(www.index.go.kr) 등에서 대상을 확인하여 지정
-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
 -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하면서 참여·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의서 작성·제출 독려
 - 공동주택 안전관리자(주택관리사 등)가 교체된 경우 제도 참여, 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적극조치

IV

일제조사 결과조치

공 통(A~E 등급)

-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(A~E)
 - 중점관리시설(A·B·C급) 또는 재난위험시설(D·E급)로 지정
-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(LDMS) 조사결과 입력 및 현행화
 - 시설개요(준공년도, 구조, 면적 등), 위치도 및 사진, 장·단기 해소계획, 재난대비체계,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,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입력 및 현행화 철저
 - 지침개정('15.3.10.)에 따른 대상 제외시설은 LDMS에서 '해제' 조치('삭제' 금지)
- 조사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반드시 소유자(관리자)에게 통보(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관리지침 서식1,2)
-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(A·B·C급 : 2명, D·E급 : 3명)

구 분	중점관리시설	재난위험시설	비 고
정	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	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	
부	시설관리부서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 •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	

재난위험시설(D, E 등급)

- 안전등급평가 결과 D, E등급 시설
 - 공공시설: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
 - 민간시설: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
-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·금지 등 응급조치
 - 공공시설: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·보강 조치
 - 민간시설: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
(정밀안전진단의 실시, 보수·보강 등 정비,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)
- 재난위험시설(D, E등급)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
 - 고 시: 재난위험시설 지정 또는 해제시 공보 또는 게시판,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
(시설관리부서에서 지정 또는 해제 방침 수립 후 안전관리과로 고시 요청)
 - 안내표지판: 위험요소, 사용금지·제한내용, 재난관리책임기관,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처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(시설물관리부서)

-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통보 : 2015. 9. 2.
- 시설관리부서 세부 조사계획 수립 : 2015. 9. 10.
-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: ~ 11. 13.
- 시설관리부서 조사결과 LDMS 입력 : 2015. 11. 20.까지
- 일제조사결과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장·단기 계획 제출
(시설관리부서 → 안전관리과) : 2015. 11. 30.까지
- 일제조사결과 제출 : 2015.12. 7.까지
(안전관리과 → 시 건설안전과)

- 붙임 1. 부서별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.
2.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대상 1부.
 3. 일제조사 결과 보고(작성서식) 1부.
 4. 특정관리대상 신규시설 및 해제시설 현황(작성서식) 1부.
 5.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및 해소계획(작성서식) 1부. 끝.